

구분	사업분류			총 사업비 (백만원)	이행도						추진율 (%)
	임기 내·외	유형 (단/중/장기)	기간		주체 (국가/시/자체)	완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 추진	일부 추진	보류	
임기내	장기	2018~ 2022	자체	743		○					100%

□ 추진배경

- (경제위기) 소비심리 위축, 내수경기 침체 가속화로 안정적인 운영자금 필요
- (경쟁력 강화) 소상공인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
- (총력대응)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경제 「대덕형 경제모델」의 속도감 있는 추진

□ 사업개요

- (명칭) 대덕뱅크 /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
- (대상)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가 대덕구, 3개월 이상 정상영업, 신용 1~7등급 내 소상공인
 *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, 동법 시행령 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),
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, 동법 시행령 제8조(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)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

《제외 대상》

-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
-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업체
-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업체

- (용자규모) 15억원 /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(1억원)의 15배 대출
- (지원내용) 이차보전(연2%) 및 신용보증 수수료(연1.1%) 지원
 - 대출한도 : 업체당 최대 1500만원 / 100개 업체 (2년거치 후 일시상환)
 - 이차보전 : 연 2% 이차보전 (최대 2년분 구 지원)
 - 신용보증수수료 : 연 1.1% (최대 2년 분 구 지원) ⇒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
 - 지원 중지 및 환수
 -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, 신용보증 수수료를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
 - 용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
 - 대출 이후 2년 안에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 - 사업장을 대전 대덕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(보증기관) 대전신용보증재단 / (대출기관) 하나은행

□ 관련조례

○ 「대전광역시 대덕구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7조
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~4. 생략

5.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

제7조(특례보증 지원) ① 구청장은 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정한다.

□ 추진내용

- 2021년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출연 계획 / 2020. 10. 19.
-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(안) 제출 / 2020. 11. 12.
- 2021년 대덕뱅크(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) 추진계획 / 2021. 3. 8.
-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/ 2021. 3. 17.
- 2021 대덕뱅크 사업 / 2021. 3. 18. ~ 3. 31.(14일 만에 완판)

□ 언론보도 및 홍보 실적

○ 홍보물 제작배포



<카드뉴스>



<12개동 홍보현수막>



<언론보도>

□ 향후계획

- (보증수수료) 대덕뱅크 사업 종료 후 신용보증수수료 / 대덕e로움으로 지급
- (대출이자) 대덕뱅크 이자 지원 / 분기별 청구(하나은행→우리구)
- (홍 보) SNS(페북, 밴드 등), 현수막, 보도자료 등 홍보강화